

#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광농업의 유형별 모형개발

하서현\*, 김경량\*, 진양교\*\*

(\*강원대학교 축산대학 축산경영학과, \*\*임과대학 녹지조경학과)

## Development Strategy of the Specific Regional Model for Each Type of Recreational Farm

Ha Seo-Hyun\*, Kim Kyung-Ryang\*, Chin Yang-Kyo\*\*

\*Dept. of Livestock management, Kangwon Nat'l Univ., Chunchon 200-701, Korea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Kangwon Nat'l Univ., Chunchon 200-701, Korea

##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document the concept of recreational farming(agricultural tourism) by categories and to form a development strategy for each type of recreational farm.

For this purpose we have examined the existing patterns of recreational farming and attempted to find out the problems in the fields of recreational farming projects.

We have differentiated the types of recreational farming with regards of regional specific aspects. Finally we have suggested several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agricultural tourism project as a device of off-agricultural income policy in Korea.

### I. 관광농업개발의 배경

#### 1. 관광농업 개발의 개념

##### 가. 농림어업과 관광의 연관성

근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관광개발과 농어업과의 연계는 농어촌구조개선이라는 입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재래농산물의 활용, 신작목의 개발 등이 고려되어, 해당작목의 선정, 시설계획, 운영조직, 자금도입의 문제점 파악 등으로 부터 금후의 농어촌에 맞는 농업과 관광이 연계된 개발수단의 방법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가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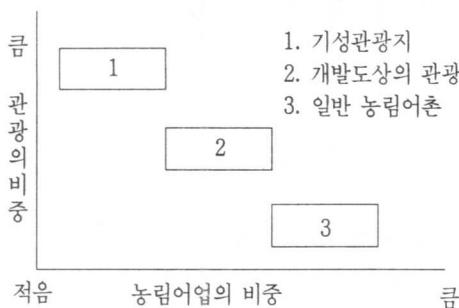
따라서 농림어업과 관광개발과의 연관정도를 살펴보는 것은 이와 같은 발전단계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농어촌의 농림어업은 지역사회의 자연조건을 기초로 하고 사회조건을加以하여 발전하지만 그러나 이 발전속도는 일반적으로 유구한 역사속에서 완만한 진보를 계속하고 있다. 농어촌지역에 대한 관광이라고 하는 3차산업의 진출은 그 진출정도에 따라서 문제가 다르다. 관광레크리에이션의 규모, 종류, 발전과정에 따라서 다양하며 여기에서 파생된 문제도 지역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

농림어업을 주체로한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관광레크리에이션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농림어업과 관광과의 관계를 모식적으로 다루어 양자의 구조와 문제점을 살펴 보자.

(그림 1)은 농산촌과 관광과의 기본적인 관계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과 같이 관광레크리에이션과 농어촌의 관계를 3가지로 구분하여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그림 1) 관광과 농림어업과의 관계



첫째는 관광레크레이션 진출이 상당히 커서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재래의 농림어업이 쇠퇴하는 경우.

둘째는 지역사회내에서 농림어업과 관광레크리에이션과의 비중이 거의 비슷한 경우.

셋째는 우리나라 농어촌의 일반적인 현상과 같이 농림어업이 주체로 있고 관광레크레이션이 거의 진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 나. 관광농업개발의 개념

농업이란 자연을 보존하고 이용하는 산업으로써 이는 자연환경을 보존함과 동시에 관광자원화하여 도시 관광객을 유치하고, 도시민에게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고, 농사일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통해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자는 것이 관광농업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관광농업은 농촌에 공장을 건설하여 농업외의 산업에 노동력을 이용하여 농외소득을 향상시키는 것 보다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을 이용한 농외소득을 증대한다는 입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높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관광농업을 관광의 본래적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 관광농업은 농업을 관광 대상으로 한 여행형태로서 협의로는 농업경영의 견학·관찰·영농연수를 말하고, 광의로는 농업을 대상으로 한 레크리에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경영자에게는 관광농업이라고 할 수 있고 외래관광객에게는 농업관광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 사람들이 자연에 대한 욕구가 커짐과 동시에 관광의 형태가 변화하여 보는 관광에서 참여하는 관광을 요구하는 단계에서 관광농업은 화색도시로 부터의 탈출구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농업은 본래의 관광적 성격과 농업을 포함한 레크레이션의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경영형태도 순수한 1차 산업적인 성격만을 띠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관광농업이란 농업의 한 과정 또는 전부를 레크리에이션 형태로 개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농장의 대여 혹은 농림수산물의 직판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이라고 개념지울 수 있을 것이다.

관광농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첫째로 도시민(내방객)이 농원, 화훼원, 목장, 낚시터 등 농림어업의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제 1조건이 되고, 다음은 지역농민이 내방객으로 하여금 농산물을 채취하거나 식물원이나 화훼원을 구경한다든가 또는 자연 속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제 2조건이 된다. 이와 같은 두가지 조건을 구비한 농업을 구체적으로 관광농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광농업은 생산경제 활동이 중심이었던 종래의 농업에서 자연환경의 보전 및 도시민을 위한 정신적, 후생적 기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농촌지역에서는 사업소 등의 증가에 따라 농업경제가 향상되는 효과와 과소화 방지의 대책이 되고, 도시근교 지역에서는 도시화의 압력에 대응하여 도시의 자연녹지 공간을 보전할 수 있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

## 2. 관광수요와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의 전망

## 가. 국민관광수요의 전망

우리나라는 1961년부터 정부의 지원으로 외국관광객을 위한 호텔 신축을 계기로 관광산업이 시작되면서 1981년에는 전국민의 60%가, 1991년에는 80%가 그리고 2000년에는 93%가 관광에 참여한다는 전망이다. 노약자와 유아를 제외하면 전국민관광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1960년대의 행락중심의 관광(일종의 놀이)에서 1990년대는 자기창조를 위한 가족중심의 관광으로 발전하여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관광객의 장기적인 관광수요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1988년에서 2001년까지 인구의 연

〈표 1〉 국민관광객 수요추정 결과

구 분			1988	1991	1996	2001	연평균 증가율(%) (1988~2001)
인 구		천명	42,593	44,094	46,366	48,351	1.0
숙박관광	참여율 1인당 참여회수 총참여 객수	% 회 천명	57.3 1.0 118,409	57.6 1.2 148,685	57.9 1.8 242,865	58.2 2.0 299,776	— 5.5 7.4
1일관광	참여율 1인당 참여회수 총참여 객수	% 회 천명	55.5 1.5 63,890	55.8 2.7 119,054	56.0 4.5 208,647	56.3 4.8 232,085	— 9.4 10.4
	총국민관광객수	천명	182,299	267,739	451,512	531,861	8.6

자료 : 한국관광공사, 「전국관광기종합개발계획(보고서)」, 1989, p. 265.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관광객의 장기적인 관광수요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1988년에서 2001년까지 인구의 연 평균 증가율을 1%로 기준하여 계측한 결과 총관광객수는 1988년 182,299천명, 1996년 451,512천명, 2001년에 5억3천만명으로 전망되어 13년간 약 3배, 연평균 8.6%씩 증가한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1일 관광이 연평균 10.4%씩 증가하며, 숙박관광(7.4%) 보다는 1일 관광객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1988년 1인당 1.5회에서 2001년에는 4.8회로 연평균 9.4%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 나. 농어촌관광휴양자원에 대한 수요전망

관광농업에 대한 관광객의 욕구가 향후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전망해 보고자 한다.

한국관광공사가 1988년 8월과 10월 2차에 걸쳐 관광지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행태, 관광지에 대한 이용자 요구사항, 이용자 만족도 등을 살펴보면 농산어촌 등의 탐방을 통하여 전원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관광활동에 대한 욕구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현재는 자연경관 감상과 역사문화 유적탐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관광추세는 자기개발과 창조적 휴식을 위한 가족 중심의 전전관광 유형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노령화 시대의 등장에 따른 잠재적 휴식 수요자의 대폭 증가와 수요대상으로서의 학생층의 의식변화 등도

농업과 관광과의 연계적인 수요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앞에서 추정된 2001년 총국민관광객수인 약 5억3천만명과 전원생활체험활동 증가추세와 연관해 볼 경우 농어촌휴양지에 대한 관광수요의 잠재력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수요의 전망은 농어촌 휴양자원개발 사업의 역사가 짧은 관계로 간접적으로 전국민의 관광수요와 수요자의 욕구를 분석한 결과로 종합하여 도출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아직까지는 농어촌 휴양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사회적으로나 수요자, 농어민 모두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며, 학계의 연구 역시 많지 않은 실정에 있다. 향후 농어촌 휴양자원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관광 이용객의 수요파악과 수요유형 및 농어촌 휴양자원개발사업의 전망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3. 관광농업의 유형

사실상 관광농업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서 전부를 분류한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닐 것이다. 일본 농림수산성이 조사한 관광농업의 현황을 유형화하여 보면 〈표 2〉와 같이 포장, 과수, 농기구 등의 농업생산수단을 대여하여

영농을 할 수 있는 생산수단 대여형, 농산물 수확시 참여하는 농산물 채취형, 목장과 화훼원 등을 개방하여 관광 위락수요에 대응하는 위락공간 제공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표 2〉를 바탕으로 관광농업의 유형을 대략 다음과 같이 네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설명 할 수 있다.

#### 가. 농림수산물 채취형

이는 농어가가 재배 또는 양식한 과일, 화훼, 임산물, 채소, 물고기 등을 이용자가 채취해 가도록 하는 것으로서 수확기에 농원을 개방하여 관광객이 직접 채취하여 수확케 하고 인건비 만큼 할인하여 판매함으로써 노동에 대한 만족도도 느끼게 하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부수적인 노동력 절감효과까지 얻는 형태이다.

여기에는 과일따기, 딸기따기, 버섯따기, 감자캐기, 밤

파기, 죽순따기, 낚시, 조개잡이, 굴따기 등이 포함된다.

#### 나. 농림수산물 직판형

이는 농어가가 수확한 농림수산물을 관광객유치가 가능한 직판장 등에서 직접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각종 과수원, 특산물농원, 약초원, 화훼원, 양어장 등이 있다.

#### 다. 생산 수단 및 시설 대여형

이는 포장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농지, 시설물, 농기구 등의 생산 수단 및 시설을 제공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즐거움과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기쁨을 느끼게 한다. 여기에는 임대농원, 임대 과수원, 주말농원, 배와 어망을 대여하여 고기를 잡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표 2〉 관광농업의 유형

유형	내용	종류
농업 생산수단대여형	포장을 소구분하여 작물재배지를 대여, 과수를 제공하는 형	대농원, 대과원
농산물 채취형	농가가 재배하는 농작물을 채취함.	과실따기, 딸기따기
위락공간제공형	휴식, 관광, 견학등을 위한 농용지 등을 개방함	관광목장, 관광화원
임업 임산물 채취형	비배관리한 임산물과 임야를 개방하는 것, 산나물을 채취	죽순따기
동식물 채취형	임야를 개방하여 곤충, 식물의 채취와 관찰을 함.	곤충원, 식물원
위락공간제공형	관상, 견학, 레크레이션 등을 위하여 임야를 개방함.	산림공원, 캠프장
어업 연안어업형	낚시등의 편리를 제공하거나 조개류를 채취하게 함.	낚시(승어, 잉어)
내수면어업형	양식어업	
위락공간제공형	낚시장제공, 해안하천을 레크레이션 장소로 제공함.	해수용장, 캠프장
기타	농산어촌의 주택을 개방하고 휴식, 숙박을 제공함.	민박촌

#### 라. 위락공간 제공형

이는 농장, 양어장, 수목원, 목장 등의 소유자가 관광객(이용자)에게 개방하여 감상, 견학토록 하는 동시에 레크리에이션 시설등을 설치, 제공하여 휴양을 위한 장소로 제공하는 형태이다. 여기에는 관광목장, 관광화원, 휴양림, 자연식물원, 캠프장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이 관광농업의 유형과 종류에 대하여 개략적

이나마 살펴보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도 포장, 과수, 농기구 등 농업생산수단을 도시민에게 대여하여 농산물을 직접 재배 또는 채취하는 즐거움을 맛볼 기회를 제공하거나 목장, 농장, 화훼원을 개방하여 레크리에이션의 다양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농업관광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 II. 관광농업 개발의 현황과 당면과제

### 1. 관광농업 개발시책의 변천

관광의 형태는 최근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종래의 관광은 위락중심의 구경, 놀이 등의 단순한 관광 형태에서 자연속에서 자연을 즐기고,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여 미래를 위한 준비의 단계인 건전한 생활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표 3〉 농어촌관광소득원개발사업시책의 변천

구 분	제 1 기(1984~1987)	제 2 기(1988~1990)	제 3 기(1991~ )
관	개발유형 농산물 직매농원 임대농원	직매농원, 임대농원, 장소제공농원, 종합관광농원 아동자연 학습농원, 호수근처농원 청소년심신수련농원	좌동
	개발규모 2ha 이내(임대농원 개별임대 50평이내) 1985년 이후 3ha 이내	1ha 이내 1989년 3ha 이내	1992년 1ha 이내
광	참여자격 1984년 지정구역내 주민, 5호 이상 공동참여 1985년 지정군관내 농민, 10호 이상 공동참여 1987년 지정지역 거주 3년 이상농업 종사하는자, 5호 이상 공동참여	농민, 비농민 참여 가능 타 지역 이주자도 가능	현지농어민 5호 이상 공동참여(농지관리 위원 5인 이상 추천) 농어민단체 (농·수·축협) 및 농어 총진홍공사, 농지개량 조합 및 영농법인도 단독 또는 농어민 공동으로 참여
농	자금지원 1984년 1마을당 2 천만원 이내(호당5백만원) 금리 : 년 10%(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1985년 1 지구당 5천만원 이내 1986년 신규지정지구 5천 만원이내 금리 : 년 10%(1년 거치 5년 균분상환) 1987년 신규, 기성지구 모두 5천만원 이내 금리 : 년 8%(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1988년 신규지역 1억원이내 기성지구 5천만원 이내 1989년 신규지구 2억원이내 기성지구 1억원이내 금리 : 년 8%(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1990년 신규지구 2억 이내 기성지구 1.5억이내 금리 : 년 8%(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1991년 신규지구 1.5억이내 기성지구 2억원이내 1992년 신규지구 1.5억이내 기성지구 2억이내 금리 : 년 5%(3년 거 치 7년 균분상환)
업	휴양단지 개발규모 : 1989~1990(7ha내외), 1991(10ha내외) 참여자격 : 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등 개발(1991) 자금지원 : 1990(단지당 6억원 이내, 금리 : 년 8%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1991(단지당 15억원 이내, 금리 : 년 8%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민 박	참여자격 : 현재 민박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하려는 농가 10호 이상 참여(1991) 자금지원 : 마을당 5천만원(농가당 3백만원 이내) 금 리 : 년 8%, 2년거치 3년 균분상환(1991)		

이러한 관광형태의 변화 과정에서 도시민의 농산어촌에 대한 고향의 향수 중대는 농산어촌이 지니고 있는 천혜의 자연자원과 도시민의 관광수요를 농어가의 소득증대와 지역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연결하고자하는 것이 관광농업개발의 기본적인 목표이다.

관광농업개발사업은 현재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외소득의 한가지 유형인 농어촌 휴양지개발사업으로 추진되어오고 있다. 농원의 조성과 이에 따른 생산물 판매, 부대 편의시설 설치 운영의 형태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 행정기관과 농협이 사업지구와 참여농가를 선정 지도하고 있다.

농림수산부가 농어가의 소득증대 방안의 하나로 시작한 관광농업개발 사업은 1984년에 12개 지구를 시범지구로 조성하여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그후 매년 개발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여 자금지원 및 기타 여러가지 지도를 해오고 있다.

개발초기의 관광농업개발은 농산물의 직매농원을 위주로 개발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직매농원을 포함한 임대농원, 장소제공농원, 자연학습농원, 심신수련농원, 유식농원, 산림욕 및 종합관광농원 등으로 종합적인 관광농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관광소득원 개발사업의 한 부분으로 1990년에 휴양단지조성 사업, 1991년 민박마을 지원사업의

시책이 시작되었다.

한국의 관광농업의 10년 남짓한 짧은 기간으로 역사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그 시작이 얼마 안되지만, 관광농업은 다른 농업부문과 달리 처음부터 농외소득 추구를 목적으로 한 상업적 농업으로 발전하였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발전의 단계를 구분하기에는 시기 상조이다. 그러나 발전 단계를 시기적 특징 및 개발의 유형, 규모, 참여자격 및 자금지원의 특징에 따라 구분한 것은 관광농업의 개발이 지역의 균형 개발과 농산어촌민에게 소득증대를 위한 것과 정부의 시책을 돌아보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단계로 구분하였다.

## 2. 관광농업 개발의 현황

### 가. 추진실적

198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온 관광농업개발 사업은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1992년까지 취소된 지구를 제외하고 1,035호 농가가 참여한 157개 지구를 지정하여 작목입식을 위한 기반조성과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해 245억원이 지원되었으며, 1993년도에는 35개 지구를 신규지정하여 68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표 4〉 관광농업개발사업 추진실적

구 분	단 위	'84~89	'90	'91	'92	계	'93(P)
운영지구수	개 소	65	36	21	35	157	35
참여 농가	천	—	—	—	1,035	1,035	175
농원 규모	ha	—	—	—	467	467	35
자금 지원	백 만	6,748	6,492	3,201	8,075	24,520	6,850

자료 : 농림수산부

### 나. 민박마을 지원

1991년도 처음으로 농외소득증대 일환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박마을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202호 농가가 참여하는 14개 마을을 지정하여 577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민박마을사업을 통한 소득은 1,604백만원(호당 평균

2,023천원)으로 이중 충북의 산간계곡 중심의 민박가구는 호당 6,222천원으로 추정되며 제주도의 해수욕장 지역의 민박농가소득은 1,012천원으로 조사되어 점차 해수욕장에서의 일시적인 민박소득보다는 산간계곡에서 연중 민박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농가소득을 높이는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 지역별 항목별 민박사업 소득실적

지 역	민박 수입	농산물 판 매	음식물 판 매	특산품 판 매	기 타	계	호당 평균 소득
경 기	33,000	5,000	17,000	6,000		61,000	1,487
강 원	115,000	80,000	60,000	29,000	1,000	285,000	3,000
충 북	161,000	25,000	10,000	28,000		224,000	6,222
충 남	152,000	25,000	12,000	4,000		193,000	2,573
전 북	32,000	4,000	5,000	1,000	1,000	43,000	895
전 남	83,000	13,000	60,000	17,000	5,000	178,000	5,085
경 북	49,000	2,000	12,000	1,000		64,000	985
경 남	383,000	28,000	32,000	28,000		471,000	5,292
제 주	66,000	8,000	2,000	1,000	8,000	85,000	1,012
계	1,074,000	190,000	210,000	115,000	15,000	1,604,000	2,823
%	67	12	13	7	1	100	

자료 : 농협중앙회 농촌개발부, 1992.

## 다. 휴양단지조성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0조에 의해서 1989년도에 경북 청송단지를 시작으로 하여 1990년도에 경북 간동과 낙단교, 충남서천 한산단지 등 4개 단지가 지정되어 용

지매수단계와 기반조성중에 있다(〈표 6〉 참조). 이와같은 조성중에 있는 4개 휴양단지 가운데 경북지역에 3개 단지로서 시범휴양단지조성사업이 경북지역에 편중되고 있다.

〈표 6〉 농어촌 휴양단지 조성계획(1991)

지정 년도	도	지구명	단지규모(ha)	자금조달 계획(백만원)			
				합 계	용 자	지방비	자부담
1989	경 북	청 송	8.0	4,028	1,000	50	2,978
1990		간 동	35.8	995	550	45	400
		낙단교	7.8	1,990	550	300	1,140
		충 남	서천한산	9.9	1,800	1,500	300
	합 계			8,813	3,600	695	4,518

## 3. 농어촌 관광 휴양자원 개발의 당면 문제점

구 분	추 진 상 문 제 점
법 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지침과 정부지원 가용자원내에서 개발되어 자발성 부족 및 개발지연</li> <li>○ 법률적, 제도적 기반의 미비</li> <li>○ 개발규제가 많고 허가절차 복잡</li> <li>○ 많은 법규제 및 법률적 기반이 미비하여 마찰과 행정 단속 많으며 시설설치가 어려움</li> <li>○ 산림내 시설에 따라 환경파괴와 하류수원 오염</li> <li>○ 개발 가용지에 따른 계획면적의 제약과 산지이용</li> <li>○ 오지 시설배치에 따른 시설비의 과다소요</li> <li>○ 관리 운영 지도 미비</li> </ul>
지원 융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발전기금의 융자금만 지원되어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타지원 사업에 비해 상대적 소외감 발생</li> <li>○ 현행 지원 한도액은 현실화 되어있지 않아 자부담이 가중되고 후속보조지원이 없어 개발 및 운영자금 부족으로 취소지구 증가</li> <li>○ 농어민 5호 이상 공동참여 또는 농협참여가 가능하나 농민의 자금능력 부족</li> <li>○ 농어민의 자금부족으로 도시인의 자본투자증가</li> <li>○ 융자금의 금리가 타 사업보다 높음</li> <li>○ 융자 상환기간이 타 사업에 비해 짧음</li> <li>○ 농어가의 담보능력 부족</li> <li>○ 융자신청시 절차가 복잡 다양함</li> <li>○ 과다투자와 이에 상반한 이용율 저조의 위험</li> </ul>
경영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참여자의 인식 및 경영능력의 부족으로 작목입식을 소홀히 함</li> <li>○ 자금투자 계획이 없이 편의시설 확대에만 치중</li> <li>○ 개원 2~3년후 운영자금 부족으로 포기</li> <li>○ 자금의 부족과 경영능력 부족으로 도시자본가 유입</li> <li>○ 고객에 대한 서비스 부족</li> <li>○ 전문 경영능력 부족으로 경영 전략 없이 무계획적으로 개발하여 경영악화</li> <li>○ 생산 및 고객관리 경영기술부족</li> <li>○ 다수농가참여 및 규모에 따른 경영의 혼란</li> <li>○ 홍보부족</li> <li>○ 주먹구구식의 경영</li> </ul>
계절의 한계성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광농원의 대부분이 여름철에만 유치가 가능하여 시설부족과 서비스 소홀 및 관광질서 문란</li> <li>○ 여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기에 대한 Program부족</li> <li>○ 자금부족으로 자체홍보 미약</li> <li>○ 정부 및 농협에 의존하여 홍보를 하나 이때 경관, 숙박시설 등 만을 홍보하여 성수기에만 관광객 유치</li> </ul>

구 분	추 진 상 문 제 점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과 관광의 연계를 고려한 경영이념 결여</li> <li>○ 지역특성을 고려치 않는 대기업 단위 농원을 모방</li> <li>○ 고정투자만 과중하게 하여 운영자금부족</li> <li>○ 계획단계에서의 면밀한 검토 부족</li> <li>○ 연중가동율 저조</li> <li>○ 지역특성을 고려치 않는 관광 농업체 형태 개발</li> <li>○ 비농민 참여</li> <li>○ 재무구조의 취약으로 자금조달능력 및 운영기술부족</li> <li>○ 농원조성 투자액에 비해 내방객수가 저조하여 손익분기 내방객수에 미치지 못함</li> <li>○ 편의시설 위주의 고정 투자가 주이며 기반시설 정비와 경영기술 부족</li> <li>○ 농산물의 상시 출하체계 미흡</li> <li>○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자격 미흡과 서비스 정신 미약</li> <li>○ 기반시설의 정비와 운영 미흡</li> <li>○ 공동휴게실, 공동판매장, 편의시설 부족</li> <li>○ 수요자가 만족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못함</li> <li>○ 시설의 유휴화</li> </ul>
운영자 및 내방객 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접목된 것을 인식하지 못함</li> <li>○ 관광농업을 판매사업(식당 등)으로 인식함</li> <li>○ 농업을 통한 관광을 인식하지 못하고 관광만을 의식</li> <li>○ 바가지 요금과 무질서한 노점상 난무</li> <li>○ 관광객의 농업에 대한 인식 부족</li> </ul>
사업시행 주체별 공공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향식 개발로서 지역민 배려 미흡</li> <li>○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아 민자유치 저조</li> <li>○ 개발재원 및 담당인력의 부족과 전문인력 확보 미흡</li> </ul>
민간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윤추구가 우선되어 지역주민 이익배려 미흡</li> <li>○ 지역민 고용참여 제한성 상존</li> <li>○ 자본회전율이 장기적인 반면 타 사업에 비해 지원미비</li> </ul>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의 영세성</li> <li>○ 사업에 대한 경영기술 및 정보부족</li> <li>○ 특정사안에 대한 주민합의 도달 곤란</li> <li>○ 공익성(환경오염, 바가지 요금, 불친절)에 반대되는 경우 발생</li> </ul>

### III. 관광농업 개발의 유형별 모형개발

#### 1. 이용자의 참여형태에 따른 구분 (Participation)

##### 가. 생산과정 참여형

농장을 소규모 단위로 구획하여, 방문객으로 하여금 작물을 재배시키거나 과수를 가꾸게 하여, 1차산업의 생산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 경작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형태다. 다른 말로 대여농원형이라고도 이름할 수 있다. 농장대여 기간은 한 주, 한 달, 또는 1년 등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며, 1년인 경우, 일절의 재배관리에서부터 수확까지의 전 과정을 이용자로 하여금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작물에 대한 개인적 소유권도 인정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 나. 농작물 채취/수확형

농가에서 재배한 각종 농작물을 이용자로 하여금 농원에서 직접 수확시켜 거두는 기쁨을 느끼게하는 형이다. 수확되는 농작물에 따라 과일 수확형과 근채류 수확형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과일 수확형은 이용자가 농가에서 재배한 생활용 생과실을 수확 시식 및 구입 귀가하는 형을 의미하며, 근채류 수확형은 이용자가 근채류 생산물을 수확 시식 및 구입 귀가하는 형을 의미한다. 이 유형의 경우, 10호 정도의 집단적인 농장운영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다. 레크레이션 장소 제공형

목장, 농장, 화훼원, 식물원 등의 농용지를 개방하여, 휴식, 관광, 견학 및 간이운동 (족구, 배구, 빌야구)등의 각종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경우,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여러 레크레이션 활동중 교육적 가치를 갖는 견학 활동을 수용하는 것이다. 그와 같은 교육적 기능이 관광농원을 타 관광위탁 자원들과 구별되도록 하는 주요 기능이 될 수 있다.

이 유형의 이용자들은 생산과정 참여형, 농산물 수확/채취형과 마찬가지로 2세를 동반하는 가족형이기 쉬우

며, 2세들에게 1차산업의 현장을 견학시킨다는 교육적 가치를 레크레이션 형태로 추구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 생산과정 참여형이 교육적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나, 참여시간과 노력을 많이 요구한다는 점에서, 레크레이션 장소 제공형처럼 견학장소를 제공하는 유형이 보다 이용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농산물 직판구매형

해당농가 혹은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토산물을 농가들이 공동으로 설치한 직판장에서 판매하여, 이용자가 구매 귀가하도록 하는 형이다. 농산물 채취/수확형과 이 유형의 다른점은 이용자가 직접 농산물을 채취/수확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체재시간이 짧은 단순경유형 이용자에게 적합한 개발유형으로서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가시적이며 피상적인 관광 농원의 사회적 수요를 담당하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 마. 단순숙박형

민박기능만을 제공하는 유형으로, 농가주택의 일부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숙박제공을 주목적으로 하며, 1차산업의 생산과정, 수단 또는 1차산업의 환경과 이용자와의 직접적인 관련이 가장 적은 유형이다. 농산물직판구매형과 마찬가지로 체재시간이 짧은 단순 경유형 이용자에게 적합하며, 실제 상당한 양의 가시적 수요를 담당하고 있다.

##### 바. 혼합형

위에 언급된 각종 유형들이 하나이상 또는 전부가 혼합되어 있는 유형을 의미하며, 따라서 현재의 가시적인 사회수요 뿐아니라 잠재적인 미래지향적 관광농업의 수요를 대체적으로 융통성 있게 수용할 수 있는 유형이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므로써, 개개농가가 개별적으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고, 개발규모면에서도 집단단지형의 개발을 요구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표 7〉은 지금까지 언급된 이용자의 참여형태에 따른 유형과 기반 1차 산업과의 관련도를 보여준다.

〈표 7〉 1차산업과의 관련도

구 분	1차산업관련도	사회적 수요구분	이용자 체재 유형
생산과정참여형	大	잠재적	장기체류형
농산물채취/수확형	大	잠개적/가시적	단기체류형
레크레이션 장소 제공형	中	잠재적/가시적	단기체류형
농산물 직판 구매형	小	가시적	경유형
단순숙박형	小	가시적	경유형
혼합형	大	잠재적/가시적	장기체류 + 경유형

## 2. 이용자의 이용목적에 따른 구분 (Stay Pattern)

### 가. 목적형

해당 관광농장이 이용자가 여행의 최종목적지가 되어서 최소한 주말 또는 일주일 이상 체류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이용자의 참여형태에 따른 유형구분중 생산과정참여형, 또는 농산물채취 및 수확형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유형이다.

### 나. 경유목적형

해당 관광농장이 이용자의 최종목적지가 되지는 않으나, 다른 관광휴양자원과의 연계속에서 중간목적지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경우의 유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강원도의 경우, 다른 관광/휴양자원이 풍부하므로 이용자가 다른 관광자원을 이용할 시에 같이 이용되도록 배려할 수 있는 유형이 된다. 단지 이 유형이 단순경유형과 다른 점은 이용자가 집을 출발할 때, 해당 관광농원의 이용을 염두에 두고, 해당 관광농원의 이용이 이용자의 관광 일정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 다. 단순경유형

해당 관광농장이 이용자의 최종 또는 경유목적지가 아니고 다른 지역 도달시에 우연히 접하게 되는 중간 경유지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주로 참여형태에 따른 유형구분에서의 단순숙박형 또는 농산물 직판 구매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 유형은 경유목적형과 마찬가지로 다른 관광자원과의 연계가 되어야 하는 것과, 그 입지가 이용자의 접근동선상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된다. (그림 2)은 이용목적에 따른 3가지 유형에 대한 도식을 보여준다.

## 3. 자원의 입지유형에 따른 구분(Location)

### 가. 산악계곡형

산간지역 소규모 농가와 관련이 있는 유형이다. 주로 계곡의 물이 농업수단이며 동시에 관광자원이 되는 입지를 의미한다. 참여형태에 의한 유형구분중 레크레이션 장소 제공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경향이 있다.

### 나. 수변형

호수 또는 강, 바다 등의 경관이 수려한 천연적 관광자원이 인접한 관광농업의 입지유형을 의미한다. 산악계곡형과 마찬가지로 레크레이션 장소 제공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용자의 이용목적에 따른 유형구분중, 목적형, 경유목적형, 그리고 단순경유형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유형으로 고려된다.

### 다. 평지형

가장 전형적인 관광농업 입지유형으로 일반적인 농가집단 부락이 집약적 농업을 유지해오는 지역에 위치한 관광농장의 유형을 지칭한다. 참여형태에 의한 유형구분중 생산과정 참여형과 통상 가장 깊은 관련을 갖는 유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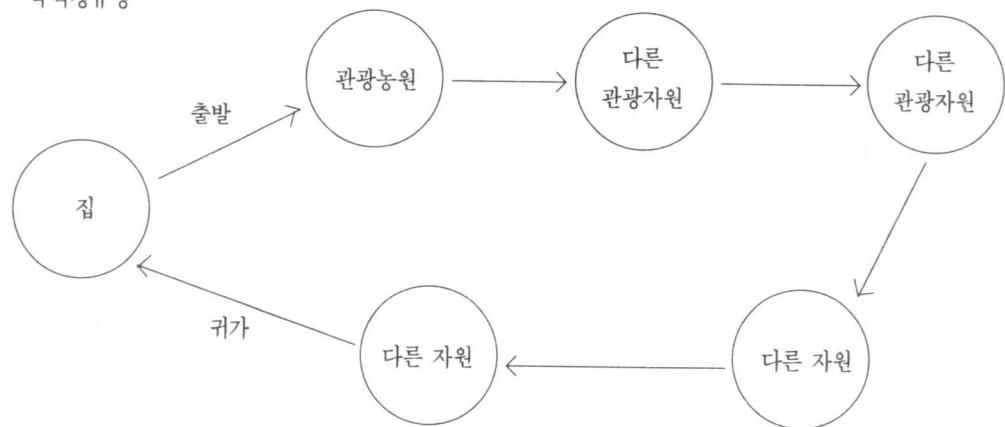
## 4. 기반 1차산업의 종류에 따른 구분(Industry)

### 가. 관광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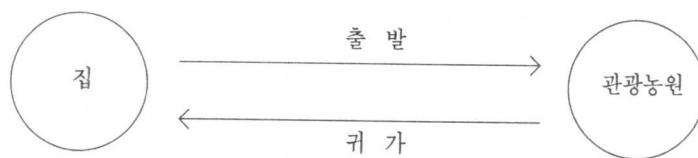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을 1차산업적 특성과 3차산업적 특성이 종합된 것으로 볼 때, 이 유형은 기반 1차산업이 농업일 경우의 유형을 뜻한다. 가장 보편적인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의 유형이기도 하며, 통상 농어촌 관광휴양자원이라 함은 관광농업을 의미할 때가 많다.

(그림 2) 이용목적에 따른 3가지 유형 도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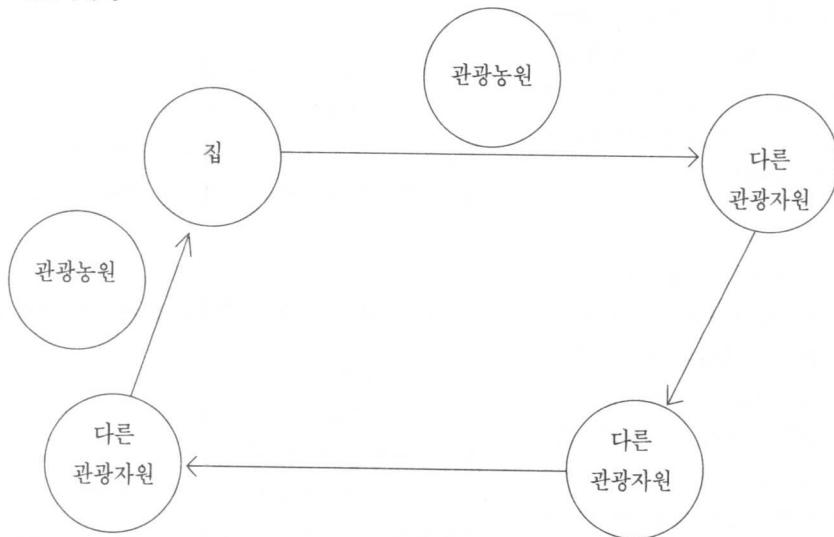
## • 목적경유형



## • 목적형



## • 단순경유형



#### 나. 관광어업

기반 1차산업이 어업일 경우의 유형을 뜻한다. 실제 사례에서 흔히 접할 수 없는 유형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잠재적 사회수요를 상당부분 담당할 수 있는 유형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유형이다. 예를 들어, 대도시이며 항구도시 (부산, 인천 등) 시민의 경우, 1차 산업에 대한 향수는 농업보다는 어업 쪽일 가능성이 많으며, 배를 타고 그물을 드리는 어업생산 과정참여등이 관광어업의 주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 다. 관광임업

관광농업과 유사하나, 관광휴양림 등이 실제 많이 조성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관광농업과는 그 기능 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독립된 유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라. 관광축산업

관광농업 다음으로 실제 사례에서 흔히 접하는 유형인데, 관광목장이라는 이름으로 보다 널리 알려져있다. 이 유형의 생사과정은 목장에서의 가축사육 (닭, 토끼, 돼지, 소 등)에 해당되며, 각 가축의 소유권도 이용자에게 부여될 수 있다. 목장에서의 우유채취는 관광농업에서의 과일 또는 근채류 수확/채취와 동일한 참여형태로 구분 될 수 있다.

### 5. 경영형태의 종류에 따른 구분

#### (Business Type)

##### 가. 영세농가형

해당 관광농원이 영세적이며, 기본적으로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관광농원경영에 참여하는 유형이다. 자가농업과 관광농원경영이 농가수익의 반반정도를 이루며, 통상 농장 이용 프로그램이 약한 실정이다. 개발규모에 따른 유형구분중 단위농가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 나. 기업형

보다 자본 집약적인 관광농원형태이며, 농장이용 프로그램을 기업주가 대체적으로 잘 개발해 놓은 편이고, 이용자 유치노력도 큰 편이다. 영세농가형에 비해 단점으로는 지역자본이 아닌 외지자본에 의해 개발되는 사례가 많

아,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라는 관광농업의 원 쥐지와는 거리가 큰 점등을 들 수 있다.

### 6. 개발규모에 따른 구분(Development Type)

#### 가. 단위농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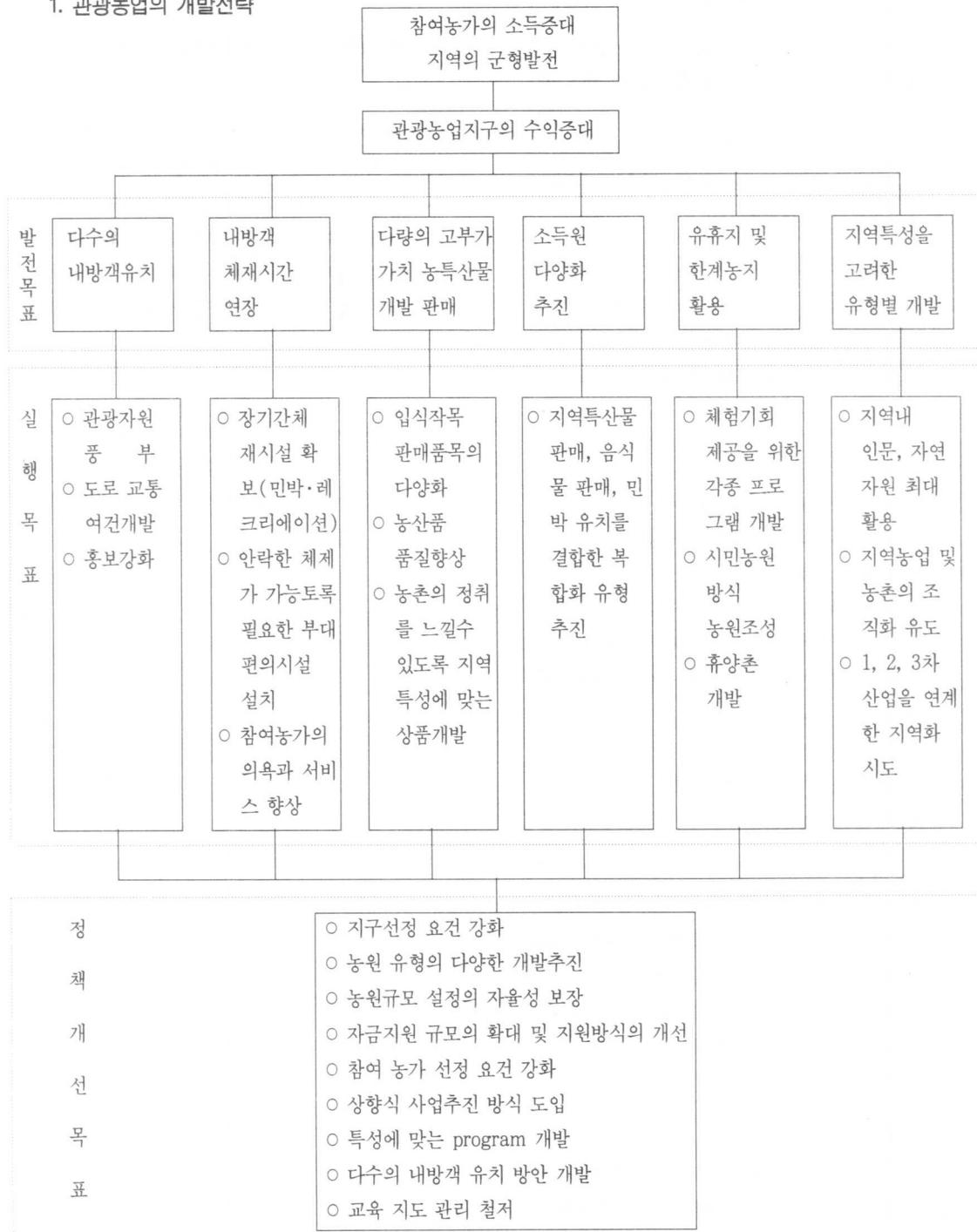
사업주체가 개인이건 기업이건 간에, 단지식 개발이 아닌 단위농가위주의 개발유형을 의미한다. 단점으로는 간접자본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을 개개 단위농가별로 조성해 줄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불리하다는 점을 들수 있고, 장점으로는 개개 단위농가가 특정한 단지개발 사업없이 바로 관광농업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 나. 집단단지형

한마을 또는 마을 일부가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하거나 개인이 기업형으로 단지 일체식 개발을 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포함한 시설의 집적성이익을 최대한 얻어내려는 개발유형을 의미한다.

## IV. 관광농업의 개발전략

## 1. 관광농업의 개발전략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외소득원개발정책의 평가와 장단기발전략, 1991. p. 360, 보완

## 2. 유휴농지와 관광농업의 연계방안

### 가. 개발단계별 문제점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는 한계지 및 유휴농지의 이용방안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등 농업의 타용도로의 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계지 및 유휴농지를 관광휴양자원으로서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도로, 시설 입지, 수요자의 접근성 등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개발의 적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적으로는 농지매입문제, 포장구획정리 사업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임대, 분양, 관리업무, 경영 등의 개발사업의 주체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한계지 및 유휴농지 개발을 위한 시민농원 방식 도입  
한계지 및 유휴농지의 자원조사와 한계지 및 유휴농지 개발을 위해서는 기초조사 실시가 선결과제이다. 한계지 및 유휴농지의 유형화 작업추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농어촌진흥공사로 하여금 한계지 및 유휴농지의 지역분포를 조사 및 개발여건 조사를 철저히 하여 개발할 수 있는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매년 늘어만 가고 있는 한계지 및 유휴농지는 1992년 6만 8천 ha에서 2000년대에는 더욱 증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의 활용방안의 또다른 방편으로는 외국의 시민농원방식을 도입하여 도시민에게 도시근교 유휴농지를 임대하는 방안을 생각 할 수 있다.

### 다. 한계지 및 유휴농지의 이용 형태 및 개발방식

#### 1) 휴양농원

고령·은퇴, 스트레스 등으로 휴식이 필요한 도시민이나 농민이 거주하면서 영리목적이 아닌 노후·내일을 위한 활기있는 전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휴양농원의 개발방식은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농진공 등이 매입하여 장기 임대하거나 농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개발하고, 두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농진공이 임대 또는 분양 희망자를 공모하여 개발, 다음으로 매점 등 부대시설은 농지 소유자나 인근 주민에게 우선 분양하고 수요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며, 네번째로 지역농민이 영농관리센타 및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의 지원을 한다. 마지막으로는 단지의 규모에 따라 간이 스포츠 시설, 놀이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이용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도시민 중 2~3세대 동거가족인 노부모 부양자에게 우선분양 및 임대하는 방식이 있다.

#### 2) 주말농장 개발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도시민이 영리가 아닌 영농과 휴식을 목적으로 농지를 임차 또는 분양받아 신선한 채소나 과수 등을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농진공의 매입농지와 잔여농지의 소유자가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또는 농지 소유 농민들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관리하며 이용자 가구당 300평 이내의 농지를 임차 또는 분양받아 주말을 이용하여 경작 할 수 있도록 개발 하여야 할 것이다. 임대의 대상자는 도시가구, 학교 및 유치원 등과 계약 실습, 기업과 계약하여 사원 주말농장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다.

#### 3) 체험농원 개발

농가가 시범적으로 재배하는 영농현장을 견학하거나 재배된 작물을 수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농업과 농촌의 생활을 직접 체험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는 농지의 소유자들이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농진공에 개발을 위탁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농진공이 직접 적지를 개발하여 소유농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도 있으며, 농지의 소유자들이 직접 공동개발하여 운영 할 수도 있다. 체험농원의 운영방법은 도시민이나 학생들이 입장료를 내고 입장하여 견학·휴식·수확물 채취등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소유농민들이 직접 시범영농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 4) 휴양단지 개발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주변에 역사적 유물, 유적, 문화재 등이 있는 농어촌 지역내에서 자연경관을 보전하면서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해 농어촌 휴양지를 지정하여, 시장·군수가 이를 직접 개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농협 또는 농진공으로 하여금 공동개발토록 한다. 휴양단지 개발은 농어촌 지역의 자연경관을 충분히 활용하여 농어촌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여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설물을 지역에 맞게 설치하여 내방객에게 건강증진, 휴양, 자연학습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의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농어촌의 폐적한 농원공간을 활용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호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농업관련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관광농업개발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

관광농업을 농업과 관광의 연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개발을 함으로써 관광농업에 대한 경영이념의 결여와 함께 지역특성을 고려치 않는 대기업 단위 농원을 모방, 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역특성을 고려치 않는 관광 농업형태의 개발로 일시적인 상품(시설, 작물, 이벤트) 개발, 무분별한 계획으로 주위경관 파괴, 지역 소득증대와 연결 미비, 특성 없는 농산물·상품판매, 도시인의 향수창출 효과 미미, 입식작목 선정의 과학성 결여, 주위여건에 맞지 않는 입지선정, 지역주민의 부분적 취업소득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발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주민과의 결속을 통하여 관광농업 개발에 대한 지역의견의 수렴과 동시에 특징을 살릴수 있도록 진입로 등의 기반시설에 대하여도 지원책의 강구가 필요하며, 관련제도의 개선과 지원시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관련제도의 개선과 지원책의 강화를 위해 군발전심의회 및 전문가의 타당성을 검토후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사업조기 확정 및 각종 인허가 업무를 신속히 추진 할 필요가 있다. 행정의 규제, 단속의 차원이 아닌 수시 점검을 통하여 부실지구의 과감한 정비 또는 보완계획의 수립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지원 후 계획위반 등으로 지정취소시에는 법적인 제재조치가 가능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추진력은 법과 제도적 뒷받침 여부에 크게 좌우하므로 관광농업의 육성을 체계화, 정착화시키기 위해서도 관광농업 육성법과 토지임차관련법규 등을 제정 및 개정할 필요가 요구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는 하향식이 아닌 관계당국, 농민, 학계, 협의회 등의 공동 참여로 일정한 절차를 밟아 제정해야 할 것이다.

#### 가. 입지관련사항

##### 1) 농업의 특성고려

기존국내 관광농업의 개발은 농업의 특성을 무시한 개발이 많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농업에 대한 진귀한 내용의 개발과 지역특산물을 개발하여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상품의 개발시 회소가치가 높은 작목을 선정하여 본 농원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작목 선정시 체험 가능한 작목을 선정하여 내방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

##### 2) 자연조건 연계

개발 가능지역의 조사·선정시 지역의 토양, 지형, 기상 등의 여건을 고려한 개발이 수행되어야 하며, 지역에 맞는 하계, 동계 프로그램 개발과 농원지형의 특성에 맞는 유형을 개발하고, 주변관광지와의 연계를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 3) 사회·경제적 조건 고려

지역의 사회, 산업, 인구 등의 여건을 감안한 수요조사 후 개발을 실시하며, 시장, 교통 등 외부적 조건 검토와 대도시와의 지리적, 시간적 관계, 원거리일 경우 숙박관광의 검토, 농원과 도로와의 거리 및 진입로 상태 검토, 3차 산업으로서의 요건 완비, 기반시설 정비, 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종류 및 가능영역을 확보한 후 개발을 하여야 한다.

#### 나. 행정부서의 적극적 관심

관광농업의 개발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를 중심으로한 행정부서와 농협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다. 어떤 사업이건 사업의 개발시에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한 행정부서와 농협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관광농업도 예외 일 수는 없다.

관광농업 개발시 지방정부에서는 법률·자금·제도분야에 대한 지원도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도단위의 특색있는 관광농원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관광농업을 전략산업으로 지정·육성하고, 관광지개발협의체를 구성 또는 기존의 구성된 협의체를 통하여 지금까지의 하향식 개발이 아닌 상향식 즉, 중앙정부, 생산자, 지도기관, 농협, 학계 등에 농업과 관광을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휴양자원 개발”의 공모를 통하여 개발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때 계획안의 제출은 지역단위의 관광농업 단지 조성을

기준으로 시·군·농협 주도, 또는 민간주도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모하여 우수지역을 선정하여년차별로 지역당 약 10억(보조 50%) 이상의 자금의 투입으로 도단위의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발계획의 수립시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공청회 등을 통하여 반드시 반영토록하며, 공영개발시에는 제 3 섹타 방식을 도입하여 지역내의 자본이 일정비율을 유지토록하여 수입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수용 및 보상 과정에서 재산권의 보장과 생활권을 보장 할 수 있는 이원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토지의 수용 및 이주대책이 필요한 곳에서 관광농업사업을 원하는 지역주민에게는 우선적으로 분양토록 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 다. 관련법규개선

중앙지침과 정부지원 가용자원내에서 하향식으로 개발되어 주민의 자발성이 부족함과 동시에 개발이 지연되므로 지역내 농어민 단체, 농협, 정부, 학계의 계획서 부터 실행까지의 공동참여와 지역주민의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이 주체가 되도록 승인제도를 상향식으로 개선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관광농업개발시 주변의 개발계획과 관련한 타법령에 제한이 없는 곳을 선정하고, 법규제 및 법률적 기반이 미비하여 각 부서간의 마찰과 행정단속 많아 시설설치가 어려우므로 행정적인 단속이 아닌 지원으로 인·허가 절차의 해소와 간소화로 개발규모의 제약조건을 폐지하여 참여농가의 희망과 능력을 고려하여 지역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지원을 한다.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상 관광농업부분의 보완과 환경보존의 국토개발차원에서 관광농업의 역할을 인정하여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부서간의 마찰은 내무, 교통, 건설부의 농어촌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광농업 개발을 연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혜택과 동일하게 관광농원 개원 5년후 부터 소득부가세를 부과하여 관광농업 개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농가의 농가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관광농업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또한

일정기간 (약 15년 이상) 전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관광농원의 규모는 규정상 3ha 내외로 되어 있지만 다수농가가 참여하거나 마을단위 또는 지역공공기관(농협 등)이 관리의 주체가 될 경우에는 농원규모의 상한을 없애고 용자규모도 농원의 규모에 비례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규정을 조정 해야 한다. 실제로 외국 관광농원의 규모는 수백 ha에 이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의 관광농원일 경우에는 경영자의 경영능력이 중요하므로 전문경영인 체제로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면서 법인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진입로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일본의 경우 소요금액의 50% 이내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지원제도는 도시민과 농민의 복지증진차원 뿐만아니고 농촌의 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주목하여 지원제도를 제정 및 개정하여야 한다.

#### 라. 지원제도 개선

관광농업의 지원은 농어촌발전기금의 용자금만 지원되어 타지원사업에 비해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현행 지원 한도액이 현실화 되지않아 자부담이 가중되고 후속보조지원이 없어 개발 및 운영자금 부족으로 취소지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농어민 5호 이상 공동참여 또는 농협참여가 가능하나 농민의 담보능력의 부족과 자금능력 부족으로 도시인의 자본투자증가로 투기성이 농후한 지가상승 및 대형 호화숙박, 음식점 등으로 투기성 개발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금의 용자시 절차가 복잡·다양하고, 용자금의 금리가 타 사업보다 높으며 용자 상환기간이 짧아 용자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금지원의 한도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용자의 조건완화와 자금의 상환기간을 장기저리로 하여 개발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정부나 농협의 직접투자 운영으로 투자에 대한 자금의 부족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 마. 교육·지도를 통한 경영능력 향상

그동안 진행되어온 관광농업 사업은 개발 참여자의 인식 및 경영능력의 부족으로 자금투자 계획이 없이 편의시

설 확대에만 치중하고 작목입식 등 농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개원 2~3년후 운영자금 부족과 농원의 특징이 없어 내방객 수가 줄어 들고 있다. 또한 고객에 대한 서비스 부족과 전문 경영능력 부족으로 경영 전략 없이 무계획적으로 농원을 운영하여 경영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 생산 및 고객관리 경영기술부족과 다수농가참여 및 규모에 따른 경영의 혼란으로 관광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광농업에 대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농민들은 농산물 생산계획에 대하여는 상당한 수준에 있지만 관광농업 경영자는 이질적인 요소가 상당부분 있으므로 관광농원을 처음시작하면 모방경영이 많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관광농원도 농원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관광산업 상품의 개발과 경영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실패하기 쉽다. 따라서 경영자의 입장이 아닌 관광객의 입장이 되어 경영의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영자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관광농업에 대한 교육·지도는 학계의 적극적인 연구를 통하여 시군의 전문지도 인력 확보, 지도자의 정례적 교육, 매 분기별 경영자교육, 국내 및 해외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경영자의 경영 능력을 항상 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내방객에 대한 교육은 경영자가 직접 담당하여 농원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며, 농협 및 지도기관의 마을환경 개선지도, 서비스교육, 전문 경영자로의 교육을 통하여 지역 및 농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비를 지원하여, 새로운 전략 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하며, 관광농원 운영방식에 관한 정례적인 교육의 실시와 정부지원하에 선진 외국농원을 견학토록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이러한 검토 및 개발계획의 수립은 개발의 의욕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학계, 정부, 지역단체의 꾸준한 연구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농민에 대한 지도를 하기 위하여 경영자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

#### 바. 홍보의 체계화

내방객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홍보활동이다. 내방객 유치를 위해 가장 큰 성과를 거둘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관광농업 “봄”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서는 자연과 함께 어린이와 자연공부를 하고, 농심찾기, 고향찾기 등의 범국민적인 분위기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조성하며, 경영자측에서는 각종 이벤트 행사 즉, 농업관광워크숍, 관광농업축전의 밤, 관광농업전시회 등의 각종 행사를 통하여 내방객 유치 전략을 세워 운영해야 한다.

또한 이의 홍보를 위해서는 중앙관련부처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관광농원의 홍보는 관광농업 봄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며, 농협 및 시군의 적극적인 자세와 지역단위 관광협의회 구성 후 자체 홍보, 관광회사, 철도청 등 교통관련 기관과 연계한 홍보, 각종 행사계획 추진, 중앙관련 부처 및 대도시의 대기업과의 연계, 지역전체의 공동상표, 캐치프레이즈를 개발한다. 또한 각 농원의 이미지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또는 협회 공동상표개발, 캐치프레이즈 개발, 각종조사연구, 안내책자와 팜플렛을 발간하고 방문객에 대한 사후 서비스 등과 고객관리 시스템 개발하고 도시마을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별도의 관광회사를 설립하여 관광농원 및 농어촌 휴양단지개발 참여농가의 체인화를 통하여 고정내방객을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사. 관광농업 개발에 대한 인식제고

관광이 소득의 주된 원천이 아니라 농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관광으로써 농업이 그 기저에 있어야 한다. 관광농업은 지역사회와의 협조관계에 있다. 관광농업의 기존 형태가 여려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근의 관광개발성향은 지역문화, 산업환경 등을 포함해서 관광자 원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개별형의 관광농원에서라도 지역농산물의 우선 판매나 지역노동력의 흡수, 농협의 이용 등을 먼저 생각한 관광농업이어야 한다. 또 지역주민들도 자기 지역을 찾아온 관광객에게 부락에 관광공해적 요소가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경제를 생각하여 지역주민 전체가 관광안내원으로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지역사회학교에서는 손흔들어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주민의식이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관광농업이 휴게소, 식당, 숙박, 농산물 단순 판매 등을 일컬어 왔다면, 앞으로의 관광농업은 관광객들이 농업생산에 직접적인 참여 등을 유도하여 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연학습장으로 활용, 초·중 고생의 관광농업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농촌알기나 농촌에서 휴가보내기 운동전개 등으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아. 사업시행주체의 선정

사업개발계획시 사업시행의 주체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농원개발의 주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농원의 형태가 바뀌게 된다. 관광농업의 공공개발시에는 하향식 개발, 수익성의 저조, 전문인력확보가 미흡한 단점이 있으나 개발시 여러가지 법률·제도적, 자금, 경영능력 등의 면에서 안전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민간개발 시에는 지역주민의 이익배려 미흡, 지역주민의 고용참여 제한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의 장점은 전문경영인의 등장으로 인하여 농원 개발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며 농원운영의 원활함과 다양한 상품의 개발이 가능하다.

사업의 운영주체는 개인사업자의 독자적 운영을 배제시키고, 지역주민의 공동, 협업 참여를 도모한다. 또한 공공개발 모색을 통한 즉, 단위 농협, 시군의 주도적 운영 또는 민자 유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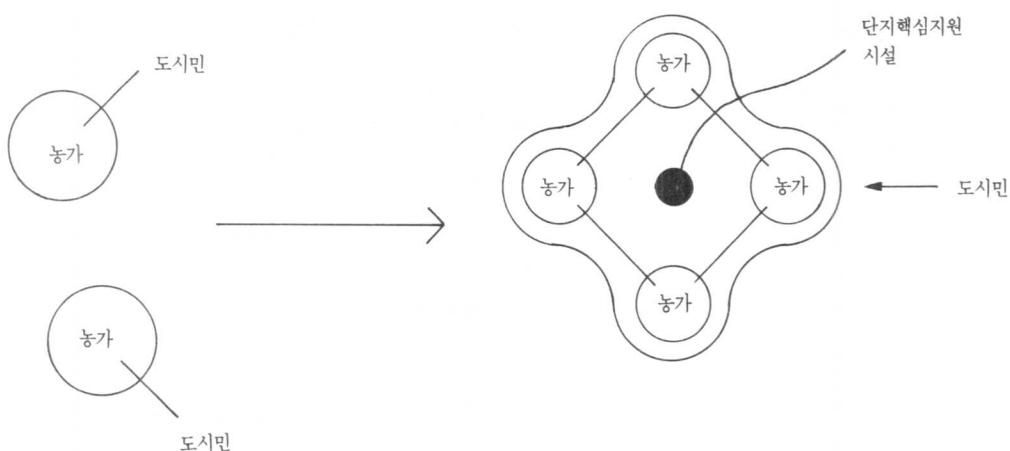
#### 4. 관광농업개발 사업의 유형별 개발

##### 가. 유형관련 개발 기본구상

###### 1) 단위농가형보다는 집단단지형 개발

(그림 3)에서 보여지듯, 개개 단위농가 중심의 개발유형이 아닌 시설의 집적이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집단단지형 개발을 유도해야 하는데, 집단단지식 개발의 또 하나의 장점은 잠재적 사회수요를 보다 능동적으로 도출시키며, 그 잠재적 사회수요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3) 집단단지형 개발모형



###### 2) 단순숙박 경유형 보다는 참여 수확 목적형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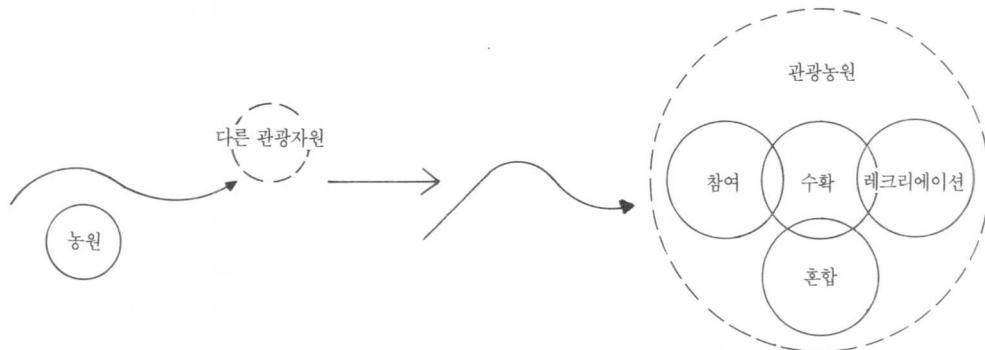
(그림 4)에서 보여지듯, 다른 관광자원을 찾아가는 경유지점에 우연히 이용되는 형태가 아닌, 이용자의 출발/방문 목적을 충족시킬수 있는 유형개발이 필요하다. 이용자의 출발/방문 목적을 충족시킬수 있으려면, 다양한 유형을 고루 갖추고 있는 형태 (혼합형)가 가장 유리하나, 혼합형의 경우에도, 생산과정 참여형과 농산물채취/수확형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 3) 무작위 이용자 중심보다는 예약장기 이용자 중심의 개발모형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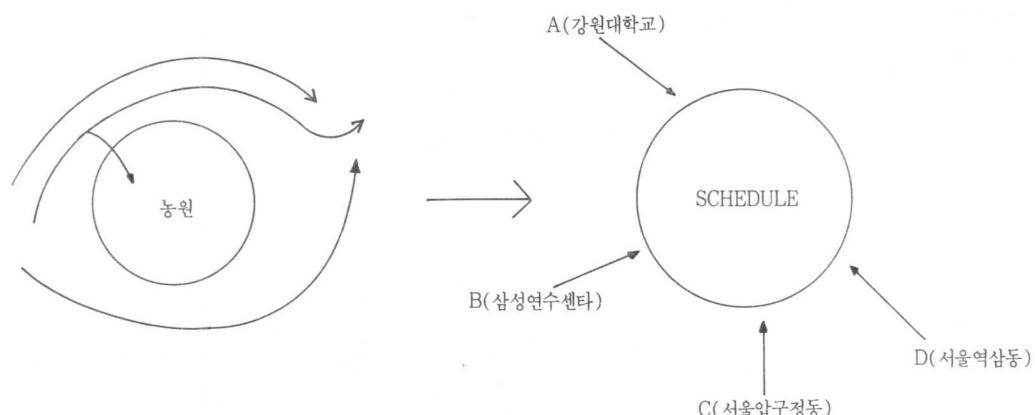
참여수확목적형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써, 중요한 것은 도시 시민에게 감추어져 있는 참여수확중심의 잠재적 수요를 실제의 가시적 수요로 전환시키는 작업인데, 이것은 예약 장기 이용자들을 찾아낸다는 의미와도 일치한다. (그림 5)은 실제 광고, 홍보 등을 통해, 관광농원의 사업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대도시에 잠재되어 있는 예약 장기

이용자들을 발굴해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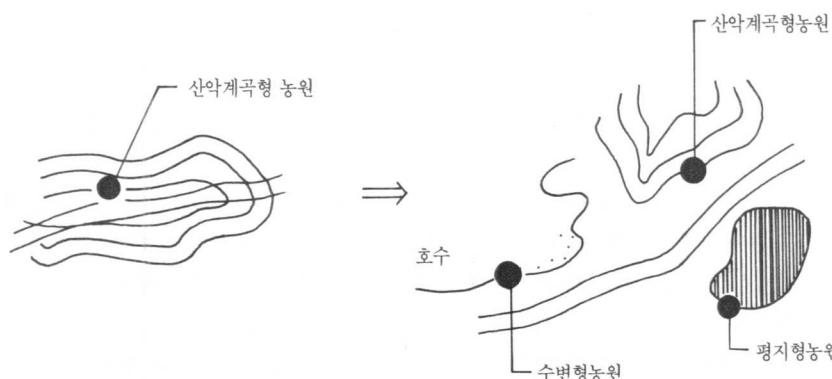
(그림 4) 참여수확목적형 개발모형



(그림 5) 예약장기 이용자 중심의 개발모형



(그림 6) 다양한 입지유형 개발모형



#### 4) 산악계곡형의 집중적개발 보다는 평지, 호반인접형 등 다양한 입지유형 개발

이용자들은 관광농원 이용시 다양한 자연환경을 접하고자 한다. 또한, 바람직한 이용 유형인 경우, 생산과정 참여형, 평지형이 가장 유리한 입지유형으로 설명되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평지형을 포함한, 다양한 입지유형의 개발이 고려되어야 한다.

##### 나. 이상적 개발 모형

###### 1) 대도시와의 근접도에 따른 개발모형(여가 Zone 별 개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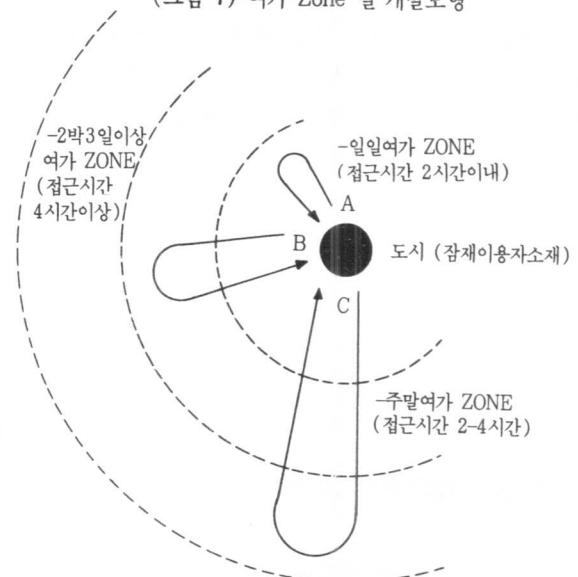
(그림 7)은 여가 Zone별 또는 잠재이용자가 소재하는 도시와의 근접도에 따른 유형들의 개발모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7)이 시사하는 바는 이용자의 잠재적 사회수요가 도시의 접근 시간대 또는 근접성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향후 농어촌 관광 휴양 자원의 잠재적 사회수요의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리라고 판단되는 것은 일일 여가 Zone(접근시간 2시간 이내)에 해당되며, 일요일 아침에 출발하여 생산과정 참여 또는 농산물 채취/수확을 끝낸 후 (체재시간 약 4~6시간) 귀가는 유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일일 여가 Zone 내에서는 가급적 생산과정 참여 또는 농산물 채취/수확의 개별유형을 집중개발하는 것이 잠재적 사회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된다.

주말여가 Zone의 경우, 해당 관광농장에서 주말을 보내고자하는 사회수요를 수용하게 되며, 따라서 생산과정 참여나 농산물 채취/수확 외에도 이용자가 남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장소제공의 기능을 같이 담는 혼합형의 개발이 유리하다.

2박 3일이상 여가 Zone의 경우는, 관광농원 자체가 목적성이 될 가능성성이 회박하며, 따라서 다른 관광자원과의 연계속에서 타 관광자원 방문목적의 우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단순 숙박과 농산물 직판구매 기능을 같이 갖는 혼합형 개발이 요구된다.

(그림 7) 여가 Zone 별 개발모형



A : 고정이용자를 대상으로 생산과정 참여형, 농산물 채취/수확형의 개별유형 중심개발 : 이용목적상 목적형중심  
B : 고정이용자 및 우연으로 생산과정 참여형, 농산물 채취/수확형, 레크리에이션 장소 제공형의 혼합형 중심개발 : 이용목적상 경유목적

C : 우연이용자를 대상으로 단순 숙박형, 농산물직판구매형의 혼합형 중심개발 : 이용목적상 단순경유형 + 경유목적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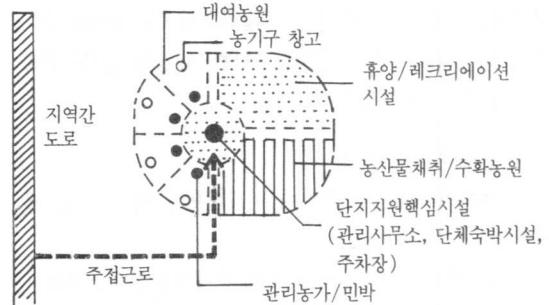
###### 2) 유형관련 이상적 개발모형 예시

(그림 8)은 주말여가 Zone에서 가장 요구되는 참여유형인 생산과정 참여, 농산물채취/수확,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장소제공 기능을 혼합한 혼합형의 집단단지형 개발모형을 예시적 개념도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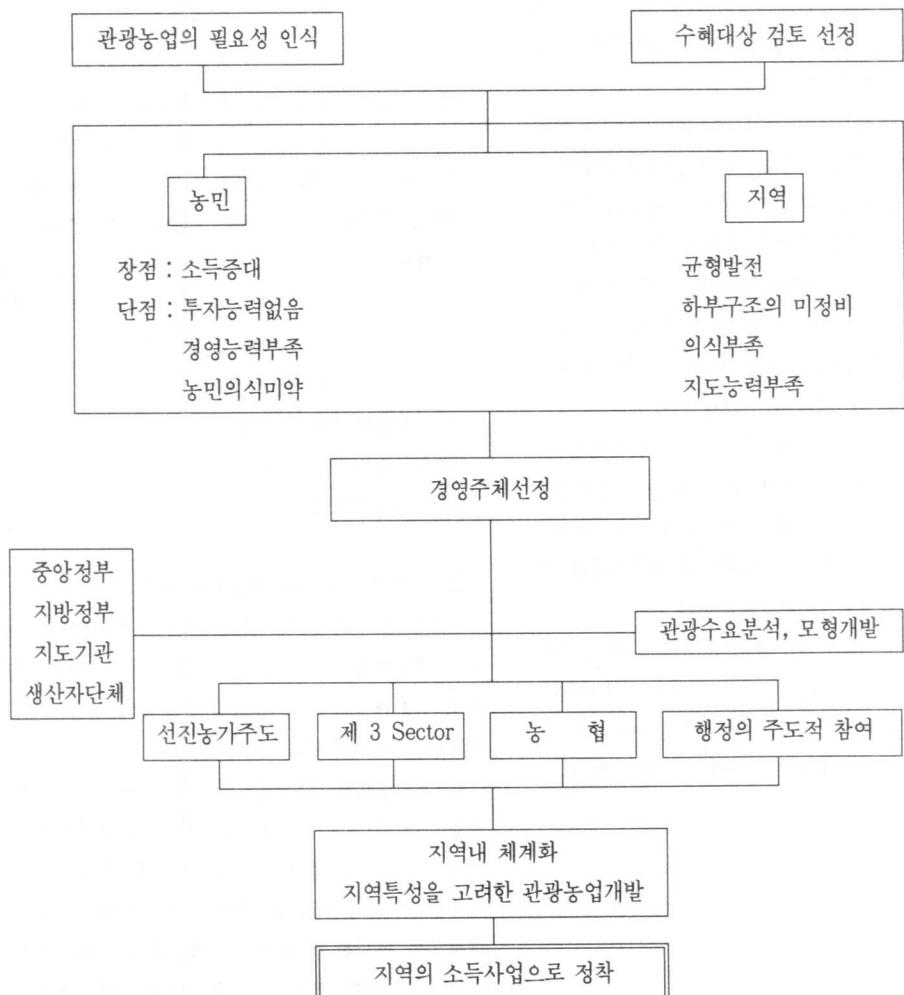
(그림 8)에서 강조하는 공간적 특징은, 첫째, 단지 전체를 지원하는 핵심시설 (관리사무소, 단체숙박시설, 주차장, 기본편익시설)을 중심으로 생산과정참여 공간과 농산물 채취/수확 공간,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둘째, 목적형 이용자를 위한 숙박 (농가숙박: 민박) 시설과 경유목적형 이용자를 위한

숙박 (단체숙박)시설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 그런 이유들로해서 다양한 관광농원에 대한 가시적 그리고 잠재적 수요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체계적 단지개발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8) 주말 여가 Zone의 집단단지형 개발모형



## 5. 관광농업개발의 추진체계



## 참고 문헌

1. 김창환, 농어촌관광소득원 개발사업 정책방향, '91 관광농업 개발사업 관계자 교육교재, 1991. 6.
2. 농협중앙회 농촌개발부, 관광농원의 조성과 운영관리, 1992. 11.
3. 농협중앙회 농촌개발부, 농어촌관광 농원 대표자 경영교육교재, 1993. 2.
4. 박석희, 관광농원의 조성기법, '91 관광농업 개발사업 관계자 교육교재, 1991. 6.
5. 서종혁 외, 농외소득원 개발정책의 평가와 장단기 발전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12.
6. 유선무, 관광농업의 개발과 경영, 협설출판사, 1992. 2.
7. 유승우, 한국관광농업의 경영실태와 유형분석,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12.
8. 최규섭, 김규태, 최상태, 경북지역 관광농업 육성방안, 경북대학농학지, 1992.12.
9. 하서현, 김경량, 강원도 농외소득사업 평가와 개발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1. 12.
10. 하서현, 김경량, 고종태, 관광농업의 실제와 과제, 강원도농축수산유통연구소기술경영자료제4집, 1993. 3.
11. 한국관광공사, 전국관광장기종합개발계획, 1989.